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262

발의연월일: 2025. 2. 18.

발 의 자:서미화・박용갑・안규백

박정현 · 강선우 · 이연희

한준호 • 한민수 • 정을호

김한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원헬스란 사람, 동물,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접근 방식임.

인간·동물·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,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.

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,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협의기구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8조의7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·대응하기 위한 사람, 동물,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·다분야·다학제(이하 "감염병통합관리"라 한다) 간 접근·협업 방안

제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7(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)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및 부처 간 공동 대비·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 기구(이하"협의기구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질병관리청장은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	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
의 수립 등) ① (생 략)	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2의2. (생 략)	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의3.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
	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ㆍ대응
	하기 위한 사람, 동물, 환경을
	포함한 범부처 • 다분야 • 다학
	제(이하 "감염병통합관리"라
	한다) 간 접근ㆍ협업 방안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7(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
	구)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
	통합관리 및 부처 간 공동 대
	비・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
	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(이하
	"협의기구"라 한다)를 설치・운
	 영할 수 있다.
	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
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

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